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군인, 경찰·소방,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산휴가”로 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을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을 “육아휴직 외 휴직”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배”를 “5배”로 하고, “9호까지”를 “7호까지”로 하고, “마급까지”를 “라급까지”로 하며,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봉급액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 또는 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

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로 하고, “9급 및 9급 상당의”를 “8급 또는 8급 상당 계급 이하의”로 하며, “소위 및 하사의”를 “하사, 중사, 소위 및 중위의”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당은”을 “수당과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산불 등 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기상 관측과 태풍,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현장감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별표 9 비고의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10의 병종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주요 장비나 무기의 조작·평가간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 병종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방사선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정비,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의 갑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방사선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정비,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의 을종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요 장비나 무기의 조작·평가간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3)의 지급대상란 중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의 지급대상란 중 “소방공무원 및”을 “소방공무원·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으로 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으로 하며, (지급액)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경력관 가군	65,000원
전문경력관 나군	34,000원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을 “140,000”으로, “50,000”을 “100,000”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약무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의 지급대상란 중 “검사업무에”를 “검사업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업무에”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4)가)의 지급대상란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목 5)의 “「의료법」제80조의2”를 “「간호법」제15조”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3,000원”을 “4,000원”으로 하고,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대상란에 “마) 경찰청 소속 경비부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신설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5) 마)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를 신설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3)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나) 소속 장관이 가)의 지급대상을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단,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1) 가) 해당자 : 월 7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 월 30,000원 이하 (3) 가산금 소속 장관은 가) 해당자 중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에 “3,000원”을 “4,000원”으로 하고,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1)의 지급대상란 중 “마)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동법 제50조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등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지원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을 신설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또는 나)의 해당자”를 “가), 나) 또는 마)의 해당자”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8,000원”을 “16,000원”으로, “120,000원”을 “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의 교통량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3호바목2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지급액과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 월 80,000원

나) 가산금

(1) 소속 장관은 수행 업무의 양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소속 장관은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과 (2)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3호바목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독성 및 마약분야 중독 대응 감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약사면허가 있는 공무원	월 200,000원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24퍼센트”를 “27퍼센트”로 한다.

별표12의 제5호 바목 “6호봉”을 “7호봉”으로 한다.

별표13의 제10호가목의 “공무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을 “공

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를 “대학 또는 대학교의”로 하며,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대행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0,000원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⑥ ---------- ---------- 5퍼센트 ----------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

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3의2, 별표 4, 별표 8,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및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 또는 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

급액의 60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3의2, 별표 4, 별표 8,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또는 8급 상당 계급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하사, 중사, 소위 및 중위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 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 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과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9